2. 한국거래소 규정
가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(KOFR OIS 거래의 중앙청산 서비스를 도입)
나.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(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)
다. 회원관리규정 (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 변경)
라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(회원의 공동기금 현금 납부 의무비율 도입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(2025/9/17 개정 · 2025/10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당국의 지표금리 개혁과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KOFR OIS 거래의 중앙청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함

— KOFR(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) : 예탁결제원이 2021년 11월부터 국채 · 통안채 담보 익일물 Repo 시장의 실거래 기반으로 산출 · 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

— OIS(Overnight Index Swap) : 익일물 금리(美-SOFR, 日-TONA 등)를 변동금리로 활용하는 이자율스왑거래

2) 주요 내용

가) KOFR OIS 거래 중앙청산 도입

□ CD금리와 KOFR에 대한 정의 신설(제2조)

— 원호이자율스왑거래에서 변동금리로 활용되는 CD금리와 KOFR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

- "CD금리"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산출하는 만기 91일 양도성예금증서의 연 수익률을 말함
- "KOFR"(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)란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를 말함

□ 청산대상거래 중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'원화 IRS 거래(CD IRS)'와 '원화 OIS 거래(KOFR OIS)'로 구분(제5조)

— 원화 IRS 거래 :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변동금리를 기초로 하는 이자율스왑(Interest Rate Swap) 거래

— 원화 OIS 거래 :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변동금리를 기초로 하는 오버나이트인덱스스왑(Overnight Index Swap) 거래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'원화 IRS 거래'와 '원화 OIS 거래'의 변동금리 요건을 CD금리와 KOFR로 각각 정의(제6조)

— 원화 IRS 거래와 동일하게 원화 OIS 거래의 계약금액, 계약만기, 이자교환주기 등 세부 청산명세는 세칙에서 정함

- 원화 IRS 거래 : 이자계산기간 초일의 직전 영업일에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기준의 CD금리
- 원화 OIS 거래 :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기준의 KOFR를 기반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 수익률

□ 원화 OIS 거래에 한하여 일일정산차금 구성항목에 '미실현이자차금' 항목 신설(제65조, 제66조, 제77조, 제78조)

— 이자계산 후 지연결제(T+2)하는 OIS 거래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락을 반영하기 위해 미실현이자차금 개념을 도입

- 이자락은 이자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교환될 이자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

나) 경매 절차 개선

□ 경매 참여 청산회원 범위 확대(제108조)

— 경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매 참여 대상을 전체 청산회원으로 확대

다) 조문 정비

□ 청산회원을 임의 탈퇴한 기관의 재강비 제한을 이사회 결의로 해제 할 수 있는 단서 마련(제9조)

— 청산회원을 임의탈퇴한 자가 청산회원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의탈퇴일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지만, 거래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

□ 청산회원의 가입일 명시(제12조, 제13조)

— 청산참가개시일 명칭을 삭제하고, 가입일을 명시함으로써 장내 회원관리규정 체계에 준하여 수정

□ 채무부담등록 보류 및 거부 관련 세칙위임 근거 마련(제50조)

— 채무부담등록 보류 및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세칙에 규정하기 위해 업무규정에 위임근거 마련

나.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(2025/9/22 제정 · 시행)[1)]

1) 제정 이유

□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 예정인 신종증권(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) 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시장의 개설(제2조)

— 유가증권시장 내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을 매매거래하는 시장(신종증권시장)을 개설

- 신종증권시장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시장과 투자계약증권시장으로 구분

□ 상장제도(제5조~제18조)

— 상장요건

- (상장신청인 건전성) 자기자본 20억원 이상, 만기 의무보유 등
- (상품신뢰도)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도산절연 및 지정자문인 선임 등
- (규모 및 분산)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,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 또는 10만좌 이상, 소액투자자 보유비중 25% 이상 등

— 상장절차

- 사전협의, 상장예비심사, 본심사 및 상장

—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

- 동일 증권에 대한 추가발행, 종목명 변경, 만기변경 등

— 상장관리

- (관리종목지정) 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한정, 상장법인 50%이상 자본잠식, 지정자문인 의무 위반, 도산절연 요건 미달 등
- (상장폐지) 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, 상장법인 전액 자본잠식, 도산절연 요건 미달(투자계약증권 한정), 신탁의 해지(신탁수익증권 한정), 계속적 사업 운영이 불가한 중대한 사건·사고 발생 등

□ 공시제도(제19조~제24조)

— (신고의무) 상장법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 ·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

1) 세칙으로 정하는 날을 시행일로 함

— (신고대상) 상장법인의 도산위험 및 사업구조 변경 등에 관한 사항, 상장증권별 이익분배 · 청산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등

— (신고의무 위반조치) 거래소는 신고의무 위반법인에 대하여 개선 계획서 제출, 신고책임자 및 담당자 교체, 공시대리인 선임 등을 요구

□ 매매 및 청산결제제도(제25조~제33조)

— (시장운영) 정규시장 운영 및 시간외시장 제외, 시장조성자 미도입, 자율 LP 제도 적용 등

— (매매거래) 지정가호가 한정, 기세 미적용,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로하되 신규상장종목 ·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종목 등에는 시가기준가 적용, 상장폐지시 정리매매 3거래일 실시 등

— (시장관리 등) 서킷브레이커, 변동성완화장치, 임의종료(RE) 등 가격 안정화장치 도입 등

— (청산결제 · 수탁제도) 보통거래방식(T+2 결제), 신종증권의 위탁증거금 100%, 대용증권 미지정 등

□ 보칙(제34조~제35조)

— 신종증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

다. 회원관리규정 (2025/9/22 개정 · 2025/11/3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국제기준 및 위험 유발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을 거래대금에서 거래증거금으로 변경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증권시장 공동기금 회원 배분기준을 거래대금에서 거래증거금으로 변경(제24조)

—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을 거래증거금으로 변경하여 회원별 위험액에 비례하여 공동기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개선

• (기존) 거래대금(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) → (개정) 거래증거금(증권시장 일평균 거래증거금)

라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(2025/9/22 개정 · 2025/11/3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결제불이행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회원의 공동기금 현금 납부 의무비율을 도입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증권시장 및 장내 파생시장 공동기금 현금예탁 의무비율 도입(제9조의3 제7항)

— 결제회원이 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본공동기금의 최소비율은 증권시장은 회원별 필요액의 25%, 장내파생시장은 회원별 필요액의 5%로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